#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8469 제안연월일: 2025. 2.

<u>번호</u>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대안에 주요내용이 반영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1	5109	박대출의원 등 10인	2024.10.31.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17.)
2	7917	서영교의원 등 10인	2025.02.05.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5.02.14.)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17.)

■ 대안에 일부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는 법안

연번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 경과	
3	4499	송석준의원 등 12인	2024.10.02.	상정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11.04.)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17.)
4	5438	박준태의원 등 10인	2024.11.11.	상정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접 회부(2024.11.25.)
				소위 심사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2025.02.17.)

- 가.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2. 17.)는 위 4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되, 1·2의 법률안 2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4의 법률안 2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함.
- 나.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25. 2. 26.)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상습으로 공중을 협박한 때에는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16조의2(공중협박) 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u>처벌한다.</u>